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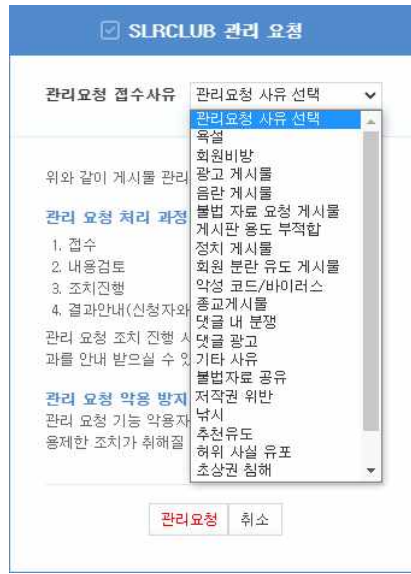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인비전커뮤니티
대 표 자	반 대 걸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SLR클럽(www.slrclub.com) / 약 30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9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표이사 반대걸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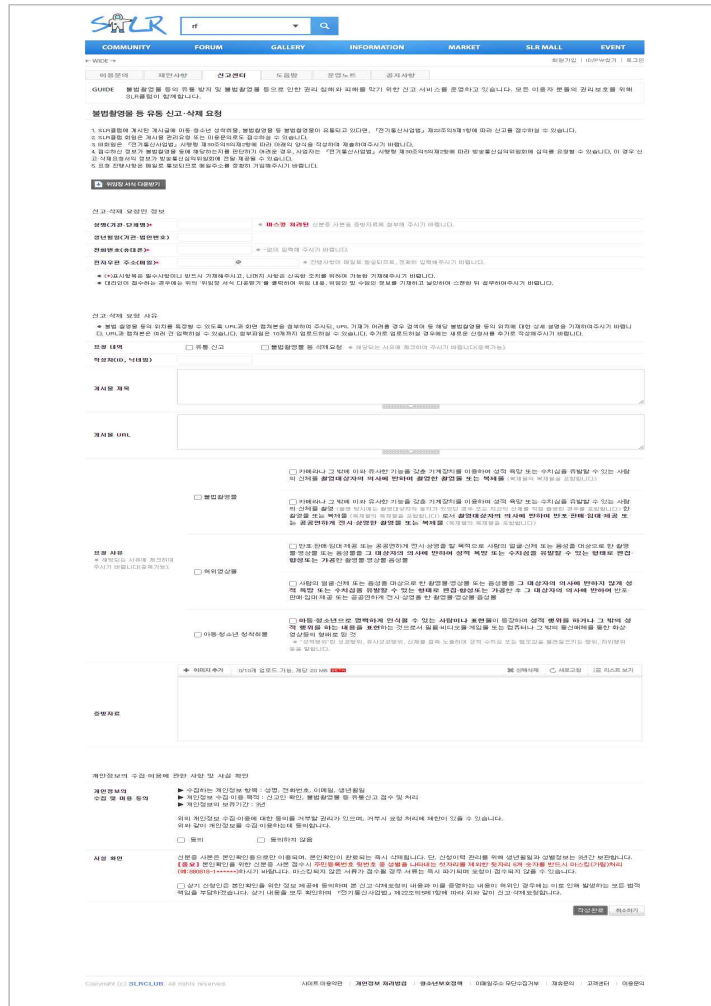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건전성저해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p>IV. 청소년 유해 매체</p> <p>SLRCLUB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사이버입니다. 대부분의 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이나 미성년자의 열람이 자유로운 만큼, 모든 게시물은 청소년의 열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p> <p>1. 건전성 저해 게시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한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촬영한 이미지 중 청소년이 열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성행위의 묘사 3. 건전성 저해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배포하거나 요청 4. 성폭력적 어휘, 내용 (예: '박고 싶다, 따먹으면 맛있겠다, 합 대주라 등) 5. 국내 유통이 금지 혹은 제한된 콘텐츠 등의 게시, 관련정보 공유, 전재 등 6.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게시물(성인인증 등)을 공개게시판 내 언급, 링크, 전재하는 경우 <p>2. 불법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매매 정보, 후기 및 알선 등 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게시물이나 유사 게시물로 다수의 회원에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관련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법) 및 동법 17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 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p>3. 혐오 게시물</p> <p>아래에 해당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이나 동물의 상처, 절흔, 사고장면, 수술/치료장면, 시신 2. 사람이나 동물의 구타, 학대장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제2장 제8조) 3. 분비물, 토사물, 소변, 대변 등 4. 귀신, 유령,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툭출되는 이미지 등으로 열람자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p>4. 위법성 게시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법행위,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내용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3.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하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다류엔터리, 보도사진, 예술작품, 역사서 등을 해당 작품의 주제나 목적에 맞게 언급하거나 전재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건전성 저해를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조치합니다).</p>
--

-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건전성저해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시스템 운영중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내부 절차 마련중 (진행중, 2월중 확정 예정)
-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참고하여 별도 온라인 신고 페이지 마련중 (진행중, 2월중 서비스 개시 예정 / 아래 시안 참고)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12.10.~31.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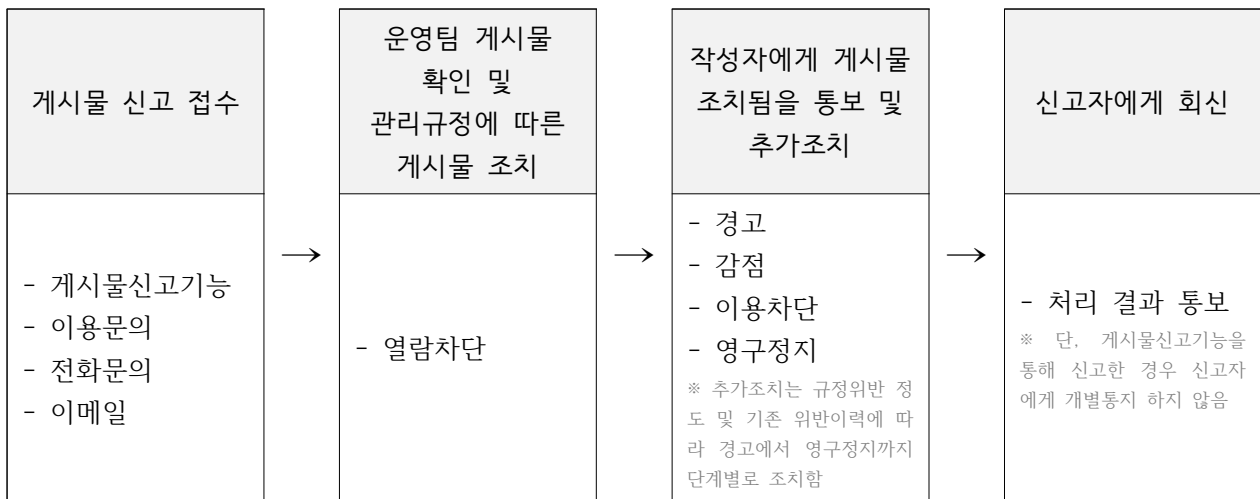
□ '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기관·단체													0	
		소계													0	
	사유	불법촬영물													0	
		허위영상물 등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	해당없음												0		
		해당없음													0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													0	
		해당없음													0	
	삭제·차단 사유	각하 등													0	
		소계													0	
	삭제·차단 사유	불법촬영물													0	
		허위영상물 등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 요청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중복계상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건전성저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운영팀 확인 후 열람차단 조치합니다. 또한 게시자에게는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추가 조치(경고, 감점, 이용차단 등)를 진행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의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 서류 접수(신분증 등)를 받지 않고 운영팀이 임의로 게시물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신고는 홈페이지 내 이용문의/전화문의/이메일/게시물 신고기능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진흥협회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별도의 온라인 신고 페이지도 마련중입니다.



< 게시물 신고 및 처리 프로세스 >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유통방지 책임자(정)	유통방지 담당자(부)
성 명	반대걸	서현진
부 서	-	운영팀
직 책	대표이사	매니저
지 정 일	2020.12.28.	2020.12.28.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2020년에는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건전성저해 게시물 처리시 건별 교육하였으나, 올해부터 일시를 지정하여 교육 시행 예정입니다.

구 분	교육예정일	교 육 명	참석자	시 간	교육기관
교육예정	2021-3-3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및 신고시스템	운영팀	1시간	자체교육
교육예정	2021-4-7	불법촬영물 신고 시 처리방안 및 사례	운영팀	1시간	자체교육